##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2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주호영·장동혁·김기웅

이인선 · 김종양 · 권영세

최은석 • 김성원 • 김재섭

정희용 · 김상훈 · 김승수

안철수 · 이헌승 의원

(14위)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3조).
- 나.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안 제5조의2).
  -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0"을 "일정 비율"로, "30만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6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
- 2.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에 대한 2027년의 기준연금액: 40만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보유 소득·재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
	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
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의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	의특례) ①
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	일정 비율
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	
연금액은 <u>30만원으로 한다</u>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lt;신 설&gt;</u>	1.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
	인 사람에 대한 2026년의 기준
	<u>연금액: 40만원</u>
<u>&lt;신 설&gt;</u>	2.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
	인 사람에 대한 2027년의 기준
	<u>연금액: 40만원</u>

②·③ (생 략)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삭 제>